

신탁제도 활용해 본인·배우자·자녀의 부양을 동시에!

재산을 물려준 후 '자식이 나를 홀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탁의 장점은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는 물론 자녀의 부양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스스로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증여보다 알찬 신탁제도 활용의 팁을 알아보자.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bhs0319@hanafn.com

▶ **학력·자격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변호사

▶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 상담 사례집

▶ **경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정위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자문
KBS, SBS스페셜(상속), YTN 등 출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상속증여 칼럼 다수 기고
(現)한국 가족법 학회 정회원

국세청이 발표한 2015 통계연보를 보면 재산의 대물림 방식이 상속에서 증여로 바뀌고 있다. 상속증여 파트를 살펴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증여재산 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18조원을 돌파했으며,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은 8만8,900여 명, 증여세 신고세액도 1조9,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2년 이후 1조6,000여 억원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식이 부모를 홀대하는 경우도 적잖이 보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효도를 계약으로 담보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에

는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계약'도 가능

대개 증여는 자녀가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자녀의 노후는 보장되는 반면 증여를 해준 부모의 노후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노후 뿐 아니라 배우자의 노후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자녀의 부양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탁제도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은행의 법률상담센터에도 신탁계약 관련 상담이 늘고 있다.

금전,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 한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맡겨진 재산을 관리하여 수익을 내는 사람을 '수탁자', 재산관리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한다.

신탁계약은 신탁자의 요구에 따른 이른바 '맞춤형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치매에 걸릴 경우, 병원비를 신탁재산에서 지출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치매에 대비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인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병원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추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신탁한 경우 '신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며, 그 기한은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자신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치매에 걸린 후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대비 재산을 팔아버릴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신탁을 이용하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안 다음 자녀가 재산을 돌려받기 원하더라도 수탁자는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해 병원비를 지출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계약 내용대로 그 등기명의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상속 발생 후 자녀의 부양이 걱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유언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자녀들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유언신탁은 유언과 신탁의 장점을 합친 제도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신의 사망 후 자녀의 부양이 걱정된다면, '자신의 사망 시부터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수익자로 자녀를 지정해 생활비를 부양하고, 이후 자녀가 결혼하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한다면 자녀의 부양과 상속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ㅎ

※본 칼럼의 내용은 전문위원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Summary

- ① 금전,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 한다.
- ② 신탁계약은 신탁자의 요구에 따른 이른바 '맞춤형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유언신탁제도를 활용한다면 상속발생 후에도 자녀들의 생활비도 지원할 수 있다.

